사유림 경영주체 육성방향에 관한 연구

장 우 환* 장 철 수*

1. 서 론
2. 사유림경영의 여건과 현실
3.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의 실태와 문제점
4. 사유림 경영주체의 육성방향
5. 요약 및 결론

1. 서 론

우리 나라 사유림은 전체 산림면적(644만ha)의 약 70.5%인 454만ha의 면적을 점하고 있으나 경영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사유림소유구조를 보면 전체 산주는 약 220여만명, 1인당 평균 소유규모는 2.1ha로 영세하며 부재산주가 전체 산주의 약 65%를 점하고 있다. 또한 목재가격의 정체와 낮은 임업투자수익율(2.1~3.5%), 값비싼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부족과 생산기반시설의 취약, 전체 산림면적의 85%가 30년생 이하의 미성숙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목재생산을 통한 산림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산주들은 산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유림에 대한 산림투자의 회피로 인해 적절한 조림, 육림, 간벌 등의 산림작업이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사유림 경영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산주는 산림을 방치하게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생산이 없는 조림의 반복으로 인하여 사유림은 쓸모없는 잡목림화될 것이다. 임업은 특성상 대면적 조방경영에 적합하나 이러한 여건하에서 사유림경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법상 사유림 경영의 주체는 산림소유자인 산주이다. 하지만 산주를 사유림 경영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경영주체로 육성하는 정책은 미약하다. 사유림 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1974년 시작된 사유림 협업경영사업, 그리고 1971년 시작된 독림가 육성제도와 1989년 시작된 임업후계자 육성제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침체된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주들에 의해 소규모로 분산

* 부연구위원

표 1 사유림 입목지[1)]의 용도별 영급구조

단위: ha

구 분	합 계	영급[2)]					
		I	II	III	IV	V	VI
총 면 적	4,426,533 (100.0)	842,733 (19.0)	1,966,748 (44.4)	1,419,978 (32.1)	166,759 (3.8)	21,171 (0.5)	9,144 (0.2)
시 업 지	3,401,410 (76.8)	681,556	1,520,844	1,070,478	116,830	9,593	2,109
제 한 지	1,025,123 (23.2)	161,177	445,904	349,500	49,929	11,578	7,035

주: 1) 입목지는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의 면적합계를 나타냄
2) 한 영급의 길이는 10년임. 괄호안의 수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1996.

되어 소유, 경영되고 있는 사유림을 대규모로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의 사유림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를 실질적인 경영주체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영세산주들의 사유림을 위탁관리·경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조직체의 설립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사유림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여건과 경영주체 육성의 실태를 살펴본 다음,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 측면에서 현행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제도의 개선방향과 새로운 경영주체 육성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사유림경영의 여건과 현실

2.1. 유령림 위주의 산림구조

우리 나라 사유림은 총 산림면적 644만ha의 70.5%인 454만ha를 점하고 있지만, 사유림의 ha당 평균축적은 40.5㎥으로 전체산림의 평균축적인 47.9㎥보다 낮은 축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입목지의 76.8%인 340만ha가 시업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한지로 되어 있다[1](표 1).

영급분포를 살펴보면 전체면적의 약 76.5%가 II, III영급에 속해있고 III영급이하의 산림이 전체면적의 95.5%를 점하고 있다. 목재생산이 가능한 V, VI영급은 0.7%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사유림의 경우 자본에 해당하는 입목축적이 낮고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영급구조가 낮은 유령림 위주의 산림구조이기 때문에 목재생산을 통한 산림소득은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소유규모의 영세성

사유림의 소유규모를 살펴 보면 <표 2>에서 보듯이 0.5ha 미만의 산주가 전체 산주의

[1] 시업지는 목재생산이 가능한 산림으로 각종 산림시업이 이루어지게 되나 제한지는 보안림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산림시업의 제한을 받게되는 산림을 의미한다. 시업제한지에 속해 있는 경우 목재생산 등 산림생산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임업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표 2 **소유규모별 산주수, 면적, 필지수 및 필지당 산림면적**

소유규모 (ha)	산주수 (명)	구성비 (%)	산림면적 (ha)	구성비 (%)	필지수	구성비 (%)	필지당 산림면적(ha)
0.5미만	1,061,883	50.5	146,230	3.2	1,307,483	36.6	0.1
0.5-1	272,075	12.9	190,635	4.1	410,339	11.5	0.5
1-5	573,645	27.3	1,298,940	28.1	1,070,133	30.0	1.2
5-10	117,537	5.6	808,305	17.5	324,651	9.1	2.5
10-50	70,980	3.4	1,310,243	28.4	321,782	9.0	4.1
50-100	4,212	0.2	290,499	6.3	50,067	1.4	5.8
100-1,000	2,117	0.1	426,067	9.2	66,776	1.9	6.4
1,000이상	58	-	144,866	3.2	18,677	0.5	7.8
합 계	2,102,497	100.0	4,615,785	100.0	3,569,908	100.0	1.3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1998.

50.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고, 100ha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0.1%에 불과하다. 특히 5ha 미만의 산주가 전체산주의 90.7%를 점하고 있으며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2.1ha에 불과하다. 5ha미만 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면적 비율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35.4%, 필지수 비율은 전체 필지수의 78.1%에 달하고 있다. 소유규모가 영세할수록 필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산림소유구조하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면적에 집중투자하지 못하고 소면적에 분산투자함으로 인해 투자효율성이 낮다. 임업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임업투자수익률이 2.1~3.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벌채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다. 전체 산림면적의 95.5%가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임업생산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산림으로부터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주들은 애써 산림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임업은 특성상 대규모 조방적 경영에 적합하나 영세한 소유규모에 소면적으로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로는 효율적인 사유림 경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2.3. 부재산주의 증가

농산촌인구의 감소는 사유림 소유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즉, 부재산주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부재산주의 증가는 농산촌지역의 사유림 경영을 담당할 지역내 경영주체의 취약화를 의미한다. 1971~1993년까지 산주수 및 산림면적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경제개발이 한창 추진중이던 1971년에는 전체 산주의 약 84%인 148만명이 농산촌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재산주는 약 16%인 27만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부재산주[2]의 비율은 1987년에 35%

[2] 소재산주와 부재산주의 구분은 산주가 임야소재시 시·군·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표 3 사유림 산주수 및 산림면적의 연도별 변화

단위: 산주수-명, 산림면적-ha, 비율-%

구 분	연 도	1971	1987	1993	1997
소재산주	산 주 수(명)	1,485,537	1,282,660	1,129,237	1,189,539
	산 림 면 적(ha)	3,641,071	2,811,546	2,153,045	2,247,919
	1인당 산림면적(ha)	2.5	2.2	1.9	1.9
	필 지 수(필지)	2,080,892	2,216,247	1,924,210	2,041,525
	필지당산림면적(ha)	1.8	1.3	1.1	1.1
	비 율(%)	84.4	64.8	55.1	54.1
부재산주	산 주 수(명)	274,958	696,396	919,055	1,007,483
	산 림 면 적(ha)	942,377	2,075,091	2,537,901	2,367,866
	1인당 산림면적(ha)	3.4	3.0	2.8	2.4
	필 지 수(필지)	392,836	1,219,924	1,618,238	1,528,383
	필지당산림면적(ha)	2.4	1.7		1.5
	비 율(%)	15.6	35.2	44.9	45.9
합 계	산 주 수(명)	1,760,495	1,979,056	2,048,292	2,197,022
	산 림 면 적(ha)	4,583,448	4,886,637	4,690,946	4,615,785
	필 지 수(필지)	2,473,728	3,436,171	3,542,448	3,569,908
	1인당 산림면적(ha)	2.6	2.5	2.3	2.1
	필지당산림면적(ha)	1.9	1.4	1.3	1.3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1998.

에서 1997년에 46%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산주의 약 절반 정도가 임야소재지와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자료(1995)에 따르면 부재산주의 경우 소유규모가 작을수록 산림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소유규모가 클수록 현지에 사는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재산주의 필지수는 1971년에 208만 필지에서 1997년에 204만 필지로 줄어든 반면, 부재산주의 필지수는 39만 필지에서 152만 필지로 크게 늘어났다. 부재산주의 필지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필지수는 247만 필지에서 357만 필지로 늘어났다. 필지수가 증가됨으로 인하여 1필지당 산림면적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1971년에 1필지당 산림면적은 1.9ha였으나 1997년에는 1.3ha로 감소하였다.

2.4. 기계화와 생산기반시설의 미비

사유림 경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서 임업기계화와 생산기반시설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목재가격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정비기반과 기계화가 늦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산촌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인건비상승에 따른 임업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임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벌채기피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자본이 회전되지 않아 산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사유림 경영의 주요한 기반시설인 임도의

표 4 1968~1996년 동안 임도시설 추진 실적

구 분	국유임도	민유임도	누 계
총 임도시설 (km)	3,344	7,509	10,853
ha당 임도밀도(m)	2.4	1.48	1.68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년도.

경우 <표 4>에서 보듯이 민유림이 ha당 1.48m로 우리나라의 평균 임도밀도 1.68m, 국유림 2.4m 보다 낮다. 낮은 임도밀도는 산지와 목재시장의 접근성이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지와 목재시장의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증가하고, 지금과 같이 목재가격이 침체된 상태하에서는 벌채로 인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임도밀도가 낮을수록 임업노동자가 각종 산림작업을 위해 임지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임업노동은 경사지가 급한 산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고 산재의 가능성이 높다. 임도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업노동의 투입은 더욱 위험하고, 산림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

한편 임업기계화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 농업용으로 개발된 장비를 변형제작 활용하거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재 및 상하차장비의 경우 굴삭기 등을 변형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벌채장비로서 필수적인 체인톱의 경우 1994년 현재 37,966대로 약 152억원에 상당한 물량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소규모 산주의 입장에서 값비싼 임업기계·장비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업기계·장비의 보급률이 매우 낮다. 이와 같이 사유림의 경우 임도밀도가 낮고 임업기계·장비의 보급이 저조하기 때문에 높은 임업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 나라의 경우 산림법상 사유림 경영의 주체는 산림소유자인 산주이다. 산주가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영림계획에 의해 시·군 산림과로 할당된 산림사업을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산주를 사유림 경영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산주를 실질적인 경영주체로 육성하거나 새로운 사유림 경영체를 육성하는 정책은 미약하다. 사유림 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는 1974년 시작된 사유림 협업경영사업, 그리고 1971년에 시작된 독림가 육성제도와 1989년에 시작된 임업후계자 육성제도가 있을 뿐이다.

이 중에서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은 1990년 임협의 협업계 조직으로 흡수된 후 지도기능만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유림 경영주체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3].

[3] 1990년 임협의 협업계 조직으로 흡수되어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의 기능이 지도기능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1974년 한독임업기술협력사업으로 시작된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은 본래 영세산주들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산림경영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유림 개발방안으로서 일종의 사유림 위탁경영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의 추진배경과 실패요

표 5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에 지원내용**

구 분	독 림 가	임 업 후 계 자
지원내용	1.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 설정 4.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5.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정보제공 등의 지원	1.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 설정 4.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법적근거	임촉법 시행령 제10조	임촉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

자료: 산림청, 임업진흥촉진법령 편람, 1998.3.

현실적으로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가 법적·제도적으로 육성정책이 강구[4]되고 있는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를 지정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사유림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단지, 산림시업을 위한 작업배정시 사업을 우선 배정하거나, 산림개발기금의 융자 및 기술자료 제공 등 소극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그치고 있다.

우리 나라 사유림 경영을 선도해나갈 실질적인 경영주체 육성측면에서 볼 때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업임가 육성차원에서의 지원시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제도상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각각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산림청장, 도지사, 시장·군수는 이들의 산림사업 실행시 <표 5>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임업경영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의무면제, 기술자료 제공 및 산림개발기금의 융자 등 소극적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에 그치고 있다. 전업적인 산림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산림경영 장비의 지원이나 규모확대를 위한 임지구입 자금의 지원 등 적극적인 육성대책이 결여되어 있다. 산림청에서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전업임가 육성을 위해 경영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업무를 다루는 기술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둘째로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한 차별적인 육성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독림가의 경우 1972년 201명이 지정되면서 시작된

인을 규명하고, 추진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유림 협업경영체가 새로운 사유림 경영주체로 육성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의 과제로 남긴다.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의 추진배경과 문제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유림 협업경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1989. 12)를 참조할 것.

[4] 독림가 육성은 임업진흥촉진법 제13조 2항 및 임촉법 시행규칙 제9조와 10조, 산림청 훈령 제456호에 의해서, 그리고 임업후계자 육성은 임촉법 제13조 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와 14조, 산림청 훈령 제534호에 의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표 6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임업진흥기금의 융자조건(1998년 현재)**

사업명	금리 (%/년)	융 자 조 건 (년)			융자한도 및 비율	사업량 및 융자 규모
		계	거치	상환		
독림가 육성	3	15	5	10	· 사업자당 3억원 이내 (30백만원까지는 신용대출)	100명 5,000백만원
임업후계자 육성	3	15	5	10	· 사업자당 2억원 이내 (30백만원까지는 신용대출)	100명 5,000백만원

자료: 산림청,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일람, 1998.

이래, 1978년 583명으로 최고점에 달했다가 1997년 현재 334명으로 매년 독림가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임업후계자의 경우 1989년 89명이 지정되면서 시작된 이래 1997년 현재 429명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독림가 숫자는 해마다 감소하는데 비해 임업후계자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5].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연령구성이나 노동력 여건, 경영규모, 경영의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의 여건이 다른 만큼 당연히 각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표 5>에서 보듯이 거의 차이가 없다. 독림가의 경우 경영규모와 자본력이 큰데 비해 고령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을 승계할 후계자나 기계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반면 임업후계자는 노동력과 경영의욕이 높은데 비해 경영규모나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규모 확대나 경영장비 · 자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를 실질적인 경영주체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이 미흡하다.

셋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임업진흥기금의 융자조건이나 융자규모도 전업임가 육성차원에서 미흡하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의 경우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융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융자규모는 독림가 100명에 대하여 50억원을 1인당 3억원 이내에서, 임업후계자 100명에 대하여 50억원을 1인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총 200명에 대한 100억원의 융자규모는 1인당 평균 50백만원에 불과한 규모여서, 경영규모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임지구입 자금으로서는 부족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시책은 기본적으로 개별적 경영능력이 있는 소수의 전업임가 육성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전체 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산주 소유 사유림의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주체 육성시책은 아니다. 영세 사유림에 대한 경영주체 육성정책은 임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5] 특히 1996년 현재 독림가의 과반수 이상인 54.9%가 60세 이상의 노년층인데 비해, 임업후계자의 경우 대부분인 86.3%가 40세 이하의 청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독림가의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독림가의 임업후계자로의 전환 등의 요인에 의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셈이다.

경영형태상으로 현재 시·군 임업협동조합 협업과·지도과 산하에 조직된 협업체가 개별산주의 생산조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지도기능만 강조되고 있어 독립된 법인이나 경영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양산임업기술 훈련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범 협업체가 겨우 협업조직으로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산림청으로부터 시·군 산림과로 할당된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대부분의 영세산주 소유 사유림의 경영은 형식상 개별영세산주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군 산림과(행정기관)에서 일반작업단을 고용해 직접 보조금사업을 시행하거나 목상, 임협에 부분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주 대신 대부분 임협이나 목상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소위 위탁작업형태[6]가 대부분이다. 임협이나 목상은 산주들이 시행해야 할 산림사업을 대신 수행해 주고, 이에 따른 작업수수료를 받는 산림작업수탁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세산주 소유의 사유림 경영이 전문적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공적·법적 경영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추구 목적의 목상(개인)이나 작업수탁에 따른 수수료수입 목적의 임협(생산자단체)이 주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유림 경영의 부실, 산림사업 배정을 둘러싼 시·군 산림과와 임협간의 갈등관계, 국고보조금의 편법적 운영에 따른 예산의 낭비 등 갖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산주의 산림사업을 시·군 산림과로부터 위탁받아 행하는 목상이나 산림사업수탁기관으로서 임협 등의 작업대행조직은 있지만, 산주와 계약관계로 산림사업을 위탁하는 법적 사유림 경영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영세산주들 소유의 사유림 경영권을 계약관계로 위탁받고, 이를 경영한 다음 최종 생산물에 대해 분배하는 사유림 경영조직체는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소유규모의 영세성, 노동·자본·경영능력 및 기술부족 등의 요인으로 방치되고 있는 영세산주 소유의 사유림 경영권을 계약관계로 위탁받고, 이를 책임경영할 수 있는 전문 경영능력과 법적 자격을 갖춘 사유림 경영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사유림 경영조직의 육성은 현재 임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영세산주 소유의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4. 사유림 경영주체의 육성방향

4.1.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제도의 개선방향

현재 소규모로 분산된 영세산림의 소유규모를 확대하고 사유림 경영주체의 경영능력과 작업기술을 향상시키는 경영주체의 육성

[6] 사유림 경영형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경영주체를 어떠한 시각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임협이나 목상이 산주의 산림을 대신 경영하는 경영체가 아니라 단지 산림작업을 대신 수탁하여 수행하는 위탁작업체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이들이 수행하는 산림작업도 위탁작업으로 파악하였다.

은 정책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두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개별 산주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단체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개별산주를 대상으로 임지구입·임차에 의한 소유·경영규모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개별산주의 경영능력과 작업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별 경영능력이 있는 산주를 대상으로 소수의 전업임가를 육성하는 수단으로서 유용성이 있으나, 정책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에 비해 정책작용 범위가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후자는 개별산주의 조직체 또는 단체를 통해 소유·경영규모를 확대하고 경영·작업기술·투자의 측면에서 조직의 유리성을 확보해나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책대상이나 정책작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없는 개별산주에 의해 방치되어 있는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는데 유용한 정책수단이지만, 추가적인 예산투자나 행정비용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자의 방법에 의한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대책이 아직 전업임가 육성차원에서 미흡한 정책수단이기는 하지만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에 의한 개별산주의 조직체 또는 단체를 사유림 경영주체로 육성하는 정책은 아직 없다.

따라서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는 전업임가 육성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가 향후 우리 나라의 사유림을 선도해나갈 경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업임가 육성차원에서의 정책방향 정립과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임업경영을 통하여 도시가구의 평균소득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전업임가를 산촌지역에 정착시키는 정책프로그램 개발은 지속적 사유림 경영과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자금여력이 취약한 임업후계자가 전업임가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임업경영규모 확대를 원할 경우 임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지정요건을 현재와 같이 단순히 임야소유규모나 조림실적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지역여건에 따라 산림을 이용한 장뇌, 산더덕, 표고 등 임산물재배업자도 포함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 융자조건 또한 쌀전업농의 농지구입자금의 경우 연리 3%에 20년 균분상환의 융자조건과 비교할 때 임지구입자금을 위한 융자조건으로서 미흡한 실정이다. 전업임가 육성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융자규모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4.2. 새로운 사유림 경영주체의 육성 방향

새로운 사유림 경영조직은 사유림 경영능력과 산림작업 기술을 갖춘 동시에 산림작업의 신뢰성과 관리의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개별산주들의 생산조직이나 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유림 경영조직을 개인경영으로 할 경우 산림작업의 신뢰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체로서 지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유림 경영조직의 형태를 개인경영으로 할 경우와 법인경영으로 할 경우의 특성을 비교한 내용

표 7 **개인경영과 법인경영의 특성 비교**

구 분	개인 경영(개별 산주)	법인 경영
경영체 성격	단독 자연인	복수 출자자의 법인
사업 계속성	사망으로 종결	영구 또는 일정기간
책임 형태	무한책임	무한 또는 유한책임
자금 조달	개인의 투자	구성원 출자, 차입금
토지 조달	상속, 구입, 차입	출자, 구입, 차입
의사 결정	경영주 단독	구성원의 합의
소유자 사망	상속 또는 파산	지분은 유산 또는 상속으로 남게 됨

자료: 김정호외 2인,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채과제, 1997, p.68.

이 <표 7>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유림 경영조직의 형태가 개인경영일 경우 경영체의 성격이 단독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의 사망이나 가족내의 후계자 단절로 인해 당대의 사유림 경영이 소멸된다.

사유림 경영조직의 영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사유림 경영조직의 형태가 법인경영일 경우 경영체의 성격이 복수출자자의 법인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사유림 경영의 영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사유림 경영조직을 법인으로 할 경우 사유림 경영의 조직화 내지 협업화를 통한 유리성과 그 경영단위의 법인화를 통한 유리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 <표 8>은 개별산주들의 사유림 경영을 협업화할 경우와 법인화할 경우의 장점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유림 경영조직을 생산조직(협업체)으로 할 경우 장점은 첫째, 사유림 경영의 전문화·복합화(다각화)를 통한 경제적 유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개별산주의 소규모 생산을 통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생산물의 고품질화·균질화·규격화를 통한 판매의 이익을 향유하고, 나아가 소규모 산주로서는 불가능한 자본·기술집약적인 사유림 경영의 실현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협업경영이 장차 기업이나 회사형태의 법인체로 발전가능한 새로운 사유림 경영의 형태라는 점이다. 협업경영은 개별산주들의 생산을 바탕으로 가공·판매 등과 연계한 새로운 법인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산주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노임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협업경영은 지역임업의 안정적인 유

표 8 **생산조직과 법인의 특성비교**

생산조직(협업체)의 특성	법인(법인체)의 특성
· 사유림 경영의 전문화·복합화를 통한 경제적 유리성 추구 · 협업경영을 통한 지역임업의 안정성·지속성확보 가능 · 개별임가의 생산을 바탕으로 가공·판매 등을 연계한 새로운 조직(법인)체로 성장 가능	· 법인격의 획득에 따른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의 주체: 세제, 산림보험제도, 융자제도 등 제도상의 유리성 · 자본조달능력 증대 및 유능한 인력확보 용이 · 사유림 경영에 대한 직업의식 고취 및 대외신용력 제고, 경영의 효율성 제고

지 및 발전을 위한 지속성 있는 사유림 경영체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협업경영은 조합원의 신규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고, 개별산주가 협업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고용증대와 소득증대에도 기여한다.

이에 비해 사유림 경영조직을 법인체로 할 경우 장점은 첫째,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법인격의 획득에 따른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활동과 경영내부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유림 경영법인의 경우 세제, 산림보험제도, 임업진흥기금 융자제도 등 제도상의 유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법인체의 경우 자본이 결합되어 자본조달 능력이 증대되며, 또한 경영관리 능력이 결합되어 총체적인 경영자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인화에 의하여 구성원 후계자의 참여조건이 정비됨으로써 유연한 경영 승계와 다양한 인재의 확보가 가능하다.

셋째, 사유림 경영법인체를 통해 사유림 경영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의식개혁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유림 경영조직이 법적으로 보장된 직장이라는 점에서 임업에 대한 직업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대외적인 신용력이 제고되어 금융면이나 시장교섭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사유림 경영조직이 회사형 법인형태로 설립되는 경우 인적집단의 성격과 자본집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 원칙을 용이하게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체 구성원을 산주에 한정시키지 않고 비산주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경영규모 확대에 따른 경영자 능력이나 노동력 및 기타 생산요소의 추가적 조달이 필요할 경우 이를 경영외부에서 조달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살릴 여지가 있다.

새로운 사유림 경영조직을 법인화의 장점을 살려 법인체 형태로 할 경우 첫째, 경영능력이 있는 개별산주의 조직화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와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는 지방공사 형태의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단기적 대안으로서 경영능력이 있는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기타 개별산주가 생산조직을 결성하고 위탁경영 참여를 희망할 경우, 개별산주들의 조직체인 사유림 경영 조합법인(안)이나 회사법인(안) 형태의 조직을

표 9 **사유림경영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의 차이점**

구 분	조 합 법 인	회 사 법 인
법인성격	협업적 사유림 경영체	기업적 사유림 경영체
설립자격	임업인, 생산자단체	임업인, 생산자단체, 비임업인
법적조직	민법상의 조직	상법상의 조직
의 결 권	1인 1표	출자지분에 의함
타법준용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
의사결정	구성원의 합의제를 원칙	대표자의 권한이 큼
장점 및 단점	설립이 비교적 용이함 세제감면 및 지원혜택 범위가 넓음 사업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음	설립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움 세제감면 및 지원혜택 범위가 좁음 사업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음

육성하는 방안이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양자의 법인 설립은 원칙적으로 임업인의 자율에 의하지만, 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직으로 설립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설립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는 점이 다르다.

법인의 성격을 보면 조합법인은 협업적 사유림 경영조직인 반면 회사법인은 기업적 사유림 경영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법인설립 자격을 보면 기본적으로 임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조합법인은 생산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고 회사법인은 생산자단체 외에 비임업인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 형태에 따른 의결권과 의사결정권이 다르다는 점이다. 조합법인은 기본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하다. 이에 비해 회사법인은 회사형태이기 때문에 출자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합법인은 구성원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법인은 대표자의 권한이 큰 특징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법인은 사업범위가 비교적 좁고 설립이 용이하지만, 세제감면 및 지원혜택 범위가 넓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비해 회사법인은 사업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지만,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세제감면 및 지원혜택 범위가 좁다는 특성이 있다.

한편, 후자는 중장기적 대안으로서 국가의 국고보조 산림사업을 개별산주로부터 위탁받아서 행하는 사유림경영관리지방공사(안)·공단(안) 등 지방공기업 형태의 사유림 대리경영 조직체를 육성하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유림 경영조직의 형태가 지방공사나 공기업의 형태가 바람직한 이유는 사유림 경영사업이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형태별 공공성과 기업성의 정도를 보면 정부기업이 기업성에 비해 공공성이 가장 큰 회사형태인 반면, 주식회사는 공공성에 비해 기업성이 우선적이다. 이에 비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형태는 기업성도 가지고 있지만 공공성의 성격이 상당히 큰 회사형태이다.

사유림 사업에 대해 국고·지방보조금이 60~80% 정도 보조되고 있고, 임업진흥기금에서 장기·저리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유림 경영조직 형태의 설정시 기업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사유림 경영조직을 상기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형태로 상정했을 경우 이들의 장단점을 정리한 내용이 <표 11>이다. 표에서 보는

표 10 회사형태별 공공성과 기업성

회사의 형태	공공성과 기업성
정부기업	공공성 / 기업성
공 단	
공 사	
주식회사	

표 11 **사유림경영관리지방공사(안)와 공단(안)의 차이점**

구 분	공 사	공 단
성격	일종의 회사(불하 가능)	일종의 공공기관(불하 불가)
설립	설립단체 단독 또는 민간합작 설립 가능(주식)	설립단체의 단독 설립(민간합작 불가)
업무관계	독립사업경영(완전성)	특정사무의 위·수탁(한정성)
경영비용	자본금+판매수입	출연금+수탁금+수수료 수입
자본조달	사채발행+민간출자 가능	불가
경영자	사장, 부이사장, 이사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해산시 자본처리	출자자에 귀속	설립단체에 귀속
장점 및 단점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작음	설립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움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큼

바와 같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모두 공법인 지방공사형태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지방공사는 불하가 가능한 일종의 회사형태인데 비해 지방공단은 불하가 불가능한 일종의 공공기관이라는 점이 다르다. 설립의 난이도를 보면 지방공사의 경우 설립단체 단독 또는 민간합작 설립이 가능한데 비해, 지방공단의 경우 설립단체의 단독설립이나 민간합작 설립이 불가능하여 설립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관계를 비교하여 보면 지방공사의 경우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한데 비해 지방공단의 경우 특정사무의 위탁·수탁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해산시 자본처리는 지방공사의 경우 출자자에게 귀속되는데 비해 지방공단의 경우 설립단체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림 경영 조직을 설립할 때, 지방공사 형태의 법인은 설립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지방공단에 비해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지방공단 형태의 경영조직은 설립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만 사유림 경영사업의 수행시 공공성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사유림 경영조직은 기본적으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고 경영능력이 없는 영세산주 소유의 사유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산주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생산조직(협업체, 법인) 또는 지자체가 개별산주로부터 산림경영을 위탁받는 경영조직체를 의미하므로 사유림 경영능력과 산림작업 기술을 갖춘 법적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정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경영능력을 갖춘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중에서 뜻이 맞는 몇사람이 생산자조직을 구성하여 경영조직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경영능력과 기술을 갖춘 개별산주들이 주체가 되어 조합형 또는 회사형의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시·군 산림과로부터 사유림의 산림작업을 대행해 주고 있는 임협이 현재의 산림작업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위임을 통한 경영조직체로서의 역할을 희망하는 경우이다. 임협 조직내에 있는 협업체를 활성화하거나 독립시켜 사유림 경영조직체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의 기술과

사유림 위탁경영 자격을 갖춘 사유림경영관리공사·공단(안) 등의 지방공기업 형태로 경영조직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사유림 경영의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형태의 경영조직체를 설립하여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3가지 대안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첫번째 대안인 경영능력과 기술을 갖춘 개별산주들이 조합형 또는 회사형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경영여력이 있는 일부 독림가나 임업후계자가 조합형 법인 형태로 참여가 용이하며, 이들 조합이 회사형 법인 설립으로 연계되어 산주 중심의 사유림 경영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별산주들이 조합형 또는 회사형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산림사업 실행 및 경영·운영상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평가·관리가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산림작업 수탁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협이 경영조직체로 참여하는 두번째 대안은 임협조직이 사유림 위탁작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와 임업기능인 작업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임협에 조직되어 있는 협업체를 독립된 경영조직체로 육성할 경우 임협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력, 기술,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의 신규설립에 따른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로서 임협조직의 특성상 고유업무와 경합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임업부문에서의 사업자체가 임협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신용사업과 경제·지도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경영조직체가 완전히 독립된 법인체로서 사유림을 책임경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협업체를 임협에서 분리하여 개별임가의 생산을 바탕으로한 법인체로 양성할 경우 과거 협업경영지도소로서 마을주민에 대한 홍보, 지도, 산림작업 및 관리 등을 실시한 경험도 있고 그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어 산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표 12 **새로운 사유림 경영주체의 대안별 장단점 비교**

새로운 사유림 경영주체		장 점	단 점	비 고
대안 1	개별산주들이 경영조직체로 참여하는 경우(예: 사유림경영 조합법인(안)·회사법인(안))	설립이 비교적 용이 개별산주의 생산조직 활성화 단기적(조합)·중기적(회사)으로 시행가능한 대안	사유림 생산조직 경영·운영상의 신뢰성 및 공공성 부족 사유림 경영 법인에 대한 정책지원 자금의 소요	개별산주의 조직·법인화
대안 2	임협이 사유림 경영조직체로 참여하는 경우	현재 임협의 경영능력, 기술, 기계장비, 작업단의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단기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	독립된 사유림 경영조직체로서 임협조직의 한계 임협 고유사업과의 경합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부작용	작업수탁기관에서 사유림 경영체로 전환
대안 3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림 경영조직체로 참여하는 경우(예: 지방공기업)	지역내 산림경영의 신뢰성 및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큼 장기적으로 가능한 대안	새로운 설립비용 부담 설립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임협과의 건전한 경쟁체제 유도

된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의 형태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경영에 참여하는 세번째 대안은 시·군 산림과로 할당된 산주의 산림사업을 가장 신뢰성있게 수행할 수 있고 임협과 건전한 경쟁체제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림 위탁경영 능력과 자격을 갖춘 새로운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전체 산림면적의 약 7할을 점하고 있지만 유령림 위주의 취약한 산림생산구조, 소유규모의 영세성, 부재산주 중심의 취약한 소유구조, 기계화 여건 및 생산기반시설의 미비, 산주의 경영의욕 저하 등의 원인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경영조직 육성측면에서 우리 나라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 소규모로 분산된 영세산림의 소유규모를 확대하고 사유림 경영주체의 경영능력과 작업기술을 향상시키는 경영주체 육성정책은 정책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두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개별 산주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단체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에 의한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대책이 아직 전업임가 육성차원에서 미흡한 정책수단이기는 하지만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에 의한 개별산주의 조직체 또는 단체를 사유림 경영주체로 육성하는 정책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유규모의 영세성, 노동·자본·경영능력 및 기술부족 등의 요인으로 방치되고 있는 영세산주 소유의 사유림 경영권을 계약관계로 위탁받고, 이를 책임경영할 수 있는 전문 경영능력과 법적 자격을 갖춘 새로운 사유림 경영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사유림 경영조직의 육성은 현재 임정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영세산주 소유의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사유림 경영조직의 육성은 시·군 산림과와 연계되어 비합법적인 산림사업 실행이 우려되는 목상조직을 대체하거나 양성화할 수 있는 대책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산림작업수탁기관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임협에 대한 대체시장(Countervailing Market) 설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 임정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유림 경영조직의 육성은 지금까지 개별산주에 대한 평균적·분산적 지원체제에서 사유림 경영기술·능력을 갖추고 규모화를 지향하는 전문경영체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사유림 정책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사유림 경영조직의 형태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임업의 실정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경영조직 설립주체가 자

율적·단계적으로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두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사유림 경영조직은 기본적으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고 경영능력이 없는 영세산주 소유의 사유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산주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생산조직(협업체, 법인) 또는 지자체가 개별산주로부터 산림경영을 위탁받는 경영조직체를 의미하므로 사유림 경영능력과 산림작업 기술을 갖춘 법적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정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첫째, 현재 경영능력을 갖춘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중에서 뜻이 맞는 몇사람이 생산자조직을 구성하여 조합형 또는 회사형 경영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둘째, 현재 시·군 산림과로부터 사유림의 산림작업을 대행해주고 있는 임협이 현재의 산림작업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임협내 협업체를 활용하여 경영조직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의 기술과 사유림 대리경영 자격을 갖춘 사유림경영관리공사·공단(안) 등의 지방공기업 형태로 경영조직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3가지 대안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일의적으로 파악할 성질이 아니다. 사유림 경영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별 여건이나 경영주체육성 정책방향, 정책도입시기 등에 따라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산림사업의 수탁능력이 있는 임협이 대리경영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안2의 방법과 개별산주들의 생산조직화를 유도하는 대안1의 조합형 법인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임협과 사유림경영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안1의 조합형 법인을 회사형 법인으로 유도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리경영체 참여를 유도하는 대안3의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유림 경영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이나 실정에 적합하도록 각 대안별 새로운 경영조직 육성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성연. 1995. "사유림의 임업진흥권역설정 및 삼림경영:임업진흥촉진법 제정을 중심으로," 임정연구 제26호, pp. 26-35.

강정일외 2인. 1993.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와 정책지원방향」, R2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정일외 2인. 1994.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조사 연구」, R2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김홍배. 1990. 「전업농육성과 영농조직활성화 방안」, R2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외 2인. 1997.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P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형광. 1993. "소규모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임정연구 제20호, pp. 38-48.

박동규외 5인. 1983. "임업에 있어서 직업훈련제도의 도입과 새로운 작업기술의 보급발전방안," 한독공동세미나 보고서. 산림청.

박문호. 1994. "농업회사법인의 유형별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위탁영농회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경환. 1995.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태와 육성방안,"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송대희·김건수. 1991. 「농촌노동력 부족과 위탁영농의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자료 '91-40.

산림청. 1995.「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계획」.
산림청. 1995.「사유림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산림청. 1997.「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일람」.
산림청 임업연구원. 1989.「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임정발전 심포지움.」.
안용식, 원구환. 1994.「지방공기업론」. 대영문화사.
안준섭. 1994. "한국 미작농업부문의 생산조직에 관한 연구:위탁영농회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유훈. 1996.「공기업론」, 법문사.
이광원외 4인. 1989.「사유림 협업경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R2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우환. 1990.「임업인의 효율적 육성방안」, R2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철수외 3인. 1997.「사유림 대리경영제 연구」, R3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두철. 1994. "위탁영농회사의 발전과정과 경영실태 분석:입지와 경영유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민호외 3인. 1997.「농민조직론」, 서울대학교 출판부.